

교장 임기 및 중임 제도 개선을 위한 「교육공무원법」 개정 촉구 건의안

(박중화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2542
----------	------

발 의 년 월 일: 2025년 03월 31일

발 의 자: 박중화, 김영철, 김재진,
김형재, 남궁역, 민병주,
박 석, 유만희, 유정인,
윤기섭, 윤종복, 이봉준,
이숙자, 이종환, 최민규,
최유희, 홍국표 의원(17명)

1. 주문

- 현행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2에 따르면 교장은 교육부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하고, 임기는 4년으로 하되 1회 중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최근 학령아동과 교원 수급의 변화 등 교육환경이 질적·양적으로 변화됨에 따라 과거 교장 지위의 독립정보다는 교원 인사의 신축성이 시급하여 교장 임기제의 당초 제도 도입 목적은 상당히 희석된 상황임.
- 이에 대해 서울특별시의회는 대한민국 국회와 정부(교육부)에 「교육공무원법」 개정을 다음과 같이 촉구함.

하나, 현행법 기존 교장의 1개 학교 내 4년 임기를 2+2로 개선하는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하여 최초 2년 임기 후 학내 구성원 의견을 반영한 성과평가를 통해 재임용 여부를 판단하여 빠르게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발맞추어 권한이 집중된 교장 직위에 탄력성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함.

둘, 현행법 교장의 전보 제한 규정 및 중임 제한 기준을 전면 재검토하여 필요 시에 관련 요건을 엄격하게 설정하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함.

2. 제안이유

- 교육공무원법상 교장 임기제는 교장 지위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학교 운영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1991. 3. 8. 개정법률을 통해 도입된 이래로 약 30여년이 지나 오늘날에 이르렀음. 2007년, 교육감 선거 방법이 주민직선으로 전환되는 등 지방교육자치제는 지속적으로 발전 되어왔던 것과 달리 교장의 4년 임기는 경직성 측면에 있어서 이제는 그 변화가 필요한 때임.
- 이는 교장의 임기를 규정함으로써 연속적이고 일반적인 학교운영을 담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학교 운영을 총괄하고 이와 관련된 의사결정을 하는 것에 있어서 막중한 역할을 하는 교장이 1개 학교에 장기 재직할 경우 학내 구성원의 민주적인 의견 수렴과 투명한 교육 행정에 부작용으로 작용할 단점이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실정임.
-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전남 및 경북 지역 초·중·고등학교 교장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4년 임기를 모두 채운 교장이 단 한 명도 없었다는 보도가 있었듯이 교장의 정해진 임기는 4년이지만 실제로 임기를 전부 채우는 교장은 극히 드물며 평균적으로 약 33개월 만에 다른 학교로 전보되거나, 개인 사유로 자리를 옮기는 사례가 많다는 사실이 드러난 바 있음.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교육공무원법」

4. 이송처

- 대한민국 국회, 교육부

교장 임기 및 중임 제도 개선을 위한 「교육공무원법」 개정 촉구 건의안

현행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2에 따르면 교장은 교육부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하고, 임기는 4년으로 하되 1회 중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육공무원법상 교장 임기제는 교장 지위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학교 운영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1991. 3. 8. 개정법률을 통해 도입된 이래로 약 30여년이 지나 오늘날에 이르렀습니다. 2007년, 교육감 선거 방법이 주민직선으로 전환되는 등 지방교육자치제는 지속적으로 발전 되어왔던 것과 달리 교장의 4년 임기는 경직성 측면에 있어서 이제는 그 변화가 필요한 때입니다.

최근 학령아동과 교원 수급의 변화 등 교육환경이 질적·양적으로 변화됨에 따라, 과거 교장 지위의 독립성보다는 교원 인사의 신축성이 시급하여 교장 임기제의 당초 제도 도입 목적은 상당히 희석된 상황입니다.

이는 교장의 임기를 규정함으로써 연속적이고 일반적인 학교운영을 담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학교 운영을 총괄하고 이와 관련된 의사결정을 하는 것에 있어서 막중한 역할을 하는 교장이 1개 학교에 장기 재직할 경우 학내 구성원의 민주적인 의견 수렴과 투명한 교육 행정에 부작용으로 작용할 단점이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전남 및 경북 지역 초·중·고등학교 교장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4년 임기를 모두 채운 교장이 단 한 명도 없었다는 보도가 있었듯이 교장의 정해진 임기는 4년이지만 실제로 임기를 전부 채우는 교장은 극히 드물며 평균적으로 약 33개월 만에 다른 학교로 전보되거나, 개인 사유로 자리를 옮기는 사례가 많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특별시의회는 대한민국 국회와 정부(교육부)에 「교육공무원법」 개정을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하나, 현행법 기존 교장의 1개 학교 내 4년 임기를 2+2로 개선하는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하여 최초 2년 임기 후 학내 구성원 의견을 반영한 성과평가를 통해 재임용 여부를 판단하여 빠르게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발맞추어 권한이 집중된 교장 직위에 탄력성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함.

둘, 현행법 교장의 전보 제한 규정 및 중임 제한 기준을 전면 재검토하여 필요 시에 관련 요건을 엄격하게 설정하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함.

2025. 4. .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일동